

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(제29조의2제2항 관련)

1. 교육과정

가.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

구분	과목	교육내용	세부내용	교육시간		
				이론	실기	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	2	2	
	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	7		
		인권과 직업윤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	6	6	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	6	3	
	노화와 건강증진	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	18	3	
		치매, 뇌졸중 파킨슨 질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			
		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			
	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의사소통과 정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	8	8
	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	6	8
			신체활동 지원	●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	6	7
● 배설 요양보호				5	10	
●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				5	10	
●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				5	7	
●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				3	8	
● 복지용구 사용				1	1	
가사 일상생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	4	8			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세탁하기 ●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		
상황별 요양보호 기술	치매요양 보호기술		● 치매 대상자와 가족	10	3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●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●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	11	10
			●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	5	4
	응급 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	임종 요양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임종 전 단계 ● 임종기 단계 ●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	3	3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응급처치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● 심폐소생술 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● 감염 관리 	6	7
		● 상황별 사례(재가, 시설, 응급)	9	6	
소계				① 126	② 114
현장실습 (80시간)	노인요양시설 실습	통합실습 I	40		
	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통합실습 II	40		
	소계		③ 80		
총 계(① + ② + ③)				320	

나.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

1) 간호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26시간) / 실기연습 (6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7	
		인권과 직업윤리	4	2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2
		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	2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6	2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
	소계			① 26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
총 계(① + ② + ③)	40
----------------	----

비고 :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.

2) 사회복지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32시간) / 실기연습 (10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4	
		인권과 직업윤리	4	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
	노화와 건강증진	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	10	3
		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	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신체활동 지원	4	3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2	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3
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		1	1	
소계			① 32	② 10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총 계(① + ② + ③)			50	

비고 :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.

3) 간호조무사·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31시간) / 실기연습 (11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7	
		인권과 직업윤리	4	2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2
		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	2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의사소통과 정서지원	5	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6	4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3
	소계			① 31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총 계(① + ② + ③)			50	

비고 :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.

- 4) 1)부터 3)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
다.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

1)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

가) 3)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 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.

나) 3)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·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2)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

3)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·사회복지사·간호조무사·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3) 경력인정기관

가)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
나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
다) 장기요양기관

라)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
마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
바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
사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,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

아)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
자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.

2. 교육과정 운영기준

가.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)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)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.
- 3)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다. 요양보호사교육기관(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(현장실습을 포함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현장실습 평가기준

가. 평가기준

- 1)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,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,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2)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나.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다.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

- 1)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3)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4. 수료기준 등

가.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·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,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.

나.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